



어린이 학대 신고 및 어린이 보호 서비스에 관한 펜실베니아 주 법률

Reporting of Child Abuse and The Child Protective Services Law of Pennsylvania (Korean)

교회 관계자,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시행 일자 : 2007년 11월1일

개정일 : 2015년 10월 1일

개정본 시행일 : 2015년 11월1일



피츠버그 교구



아동 학대 신고 접수 및 아동 보호법 시행령(펜실베니아)

교회 직원으로써 역할과 아동 학대 사건의 보고와 관련된 펜실베니아 연방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써 다음 사실을 인지한다

1. 아동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해로운 신체 방치 행위이다.
2. 의무 보고 사항은 보육 시설, 교구 또는 학교의 관리하에 있는 미성년자들(18세 이하)에게 한정된다.
3. 의무 보고 사항은 관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아동학대 의심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 되어야 한다.
4. 교구/학교에 지켜야 할 보고 체계가 있음을 인지 한다.
5.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the 24 hour Child Abuse Hotline (ChildLine)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무료 전화 1-800-932-0313.
6. 전화 신고후 48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7. 가해자가 학교 근무자 일 경우 추가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직원/봉사자)은 민사 소송에 면책 특권을 갖는다.

나는 펜실베니아 주의 아동 보호법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신중하게 숙지하고 있다.

Name Parish, School, Office or Program

Position Date

RETURN THIS SIGNED ORIGINAL TO THE PARISH, SCHOOL OR DIOCESE AND KEEP THE OTHER COPY.

아동 학대 신고 접수 및 아동 보호법 시행령(펜실베니아)

교회 직원으로써 역할과 아동 학대 사건의 보고와 관련된 펜실베니아 연방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써 다음 사실을 인지한다.

1. 아동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해로운 신체 방지 행위이다.
2. 의무 보고 사항은 보육 시설, 교구 또는 학교의 관리하에 있는 미성년자들(18세 이하)에게 한정된다.
3. 의무 보고 사항은 관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아동학대 의심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 되어야 한다.
4. 교구/학교에 지켜야 할 보고 체계가 있음을 인지 한다.
5.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the 24 hour Child Abuse Hotline (ChildLine)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무료 전화 1-800-932-0313.
6. 전화 신고후 48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7. 가해자가 학교 근무자 일 경우 추가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직원/봉사자)은 민사 소송에 면책 특권을 갖는다.

나는 펜실베니아 주의 아동 보호법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신중하게 숙지하고 있다.

Name *Parish, School, Office or Program*

Position *Date*

KEEP THIS SIGNED ORIGINAL FOR YOUR FILES.

펜실베니아 아동 학대 신고 및 아동 보호 법 시행령

서문

2015년 4월 22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아동 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CPSL)이 시행되었다. 이 수정안은 아동과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요한 필수사항을 제시해 준다.

또한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범죄로 정의한다.

이 소책자는 교회 직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어떻게 법을 준수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학대"는 성적 학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신체적 부상,착취, 또는 해로운 방임형 학대도 포함한다. 여기에서 "아동"은 18세 이하의 개인이다.

확장된 보고 의무 사항에 따른 교구 직원들의 증언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다. 피츠버그 교구장은 모든 교회 직원들이 보고에 따른 법률 자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WHO

보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 미 국무부 산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허가를 받는 자 또는 인증 기관
- 검시 의사, 검시관 또는 장의사
-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의료 기관이나 사업자의 건강 보험 종사자 또는 본인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자.

- 교직원
- 고용 과정에서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보육원 직원
- 성직자, 사제, 랍비, 목사, 기독교 과학 실무 종사자들(의사, 변호사) 종교적 치료사 또는 정기적으로 정착된 교회나 다른 종교 단체의 정신적 지도자
- 정기적인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에서 아동 복지를 담당하거나 아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유급 또는 무급의 개인
- 고용 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사회 복지사
- 청원 경찰 또는 경찰관
- 보건 서비스 부서에서 인정한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
- 근무 시간중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립 도서관의 직원
- 위에 언급된 근무 시간중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의 관리자 또는 개인 감독관
-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독립 계약자
- 단체, 기관, 기구 또는 기업, 학교에서 아이들의 통제, 지도, 관리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종교 단체와 연계된 변호사
- 양부모
- 아동의 복지를 담당하고 가정이나 소년원의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소의 운영자, 공공 복지 규약 제 9조 및 제 10조에 의한 면허증을 가진 성인 구성원

아동 학대 혐의를 신고 해야할 사람은 누구인가?

- 누구나 의심스러운 학대에 대해 신고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동 학대 신고 의무 사항	
보고서는 언제 작성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학대 혐의 발견 즉시 신고한다.
만약 관리중인 직원이나 봉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자체단체 관계자, 지방 검사, 교구의 법률 사무소에 신고한다. 학교나 교구 사무소가 근무중이면 이곳에도 보고한다. • 교구 법률 사무소와 협력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조직 자체 비용으로 세로운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 받은 가해자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업무 정지를 시행한다.
보고자는 어떻게 보고 받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tecting God's Children (Virtus®) Training; and • 피츠버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서비스 www.reportabusepa.pitt.ed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인증서를 인쇄한다: one for the staff member/volunteer, the parish/school, and the Diocesan Human Resources Office/Safe Environment Coordinator. 피츠버그 대학교는 Act 126조 증명서를 제공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 학대 신고 의무 사항	
교회나 학교의 의무 보고자는 누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직자 • 학교 직원 • 학교 봉사자 • 그 밖의 아동과 그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과 봉사자들 •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개인 사업자
의무 보고자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p>아동 학대 피해자가 의심 될 경우 보고 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되 있지 않지만, 의심스러운 경우 훈련된 전문가들이 실제 발생한 일을 알아내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돕는다. • “아동 학대”란 무엇인가? “아동 학대” 는 다음과 같은 의도적, 고의적 또는 난폭한 행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인 신체상의 손상 ◦ 아동에게 해로울 수 있는 의료 행위 ◦ 고의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 어떤 성적 학대나 착취 행위를 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발로 차기, 물기, 던지기, 화상 입히기, 때리기, 상처 내기, 부당한 통제/강금, 심하게 흔들거나 부딪히게 하는 행위: 아이를 성범죄에 방치하는 경우 ◦ 심각한 신체적 방치 행위 ◦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 • 예외: 성직자들과 변호사들은 비밀 보장의 예외가 있다.
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Line by phone at 1-800-932-0313 또는 online at https://www.compass.state.pa.us/cwis • 전화 보고는 48시간 이내에 지역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교회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WHAT

보고 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아동 학대의 피의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의심할만한 정당한 이유**”
이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심스러운 경우는 보고서를 만들고 훈련된 전문가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밝혀내게 한다.
 - “**아동 학대**”
“아동 학대” 라는 용어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또는 난폭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 일시적이더라도 큰 통증이나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고의적인 물리적 상해
 - 아동에게 해로울 수 있는 의학적 평가나 치료법 투여 (즉, 거짓으로 의학적 평가를 하거나 의학적 증상·병을 유발하는 치료법)
 -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상당한 정신적 부상에 기여하는 원인 (즉, 아이를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상태, 우울감, 사회적 고립, 정신병,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성장장애, 사회적 과제가 불가능한 상태, 삶이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두려움)
 -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의 경우 (즉, 아동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행위에 고용되거나 그 행위가 촬영되는 경우)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경우
 - ◇ 아동을 위협하기 위해 때리거나 물거나 던지거나 칼로 다치게 하는 경우
 - ◇ 아동을 비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가두는 경우
 - ◇ 1세 이하 아동을 물리적으로 흔들거나 때리는 경우

- ◇ 아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경우
- ◇ 아동을 필로폰 (methamphetamine) 연구실에 놓아 두는 경우
- ◇ 아이를 혼자 두거나 부모가 아니 다른사람(성범죄자, 성폭행범)과 같이 있도록 방치하는 경우.
 - 아동의 생명과 발육,기능장애의 아동을 위험속에 방치하는 심각한 행위. 그러나 적절한 주택, 의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부모의 금융적 무능이 해당되지는 않는다. 아동 학대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성적 학대. 착취의 경우
 - 어떠한 행동이나 행동하지 않음으로 아동의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
- 교회 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학대 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모든 학대를 신고해야 한다.
-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범죄를 직접 관찰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는 아동 학대 혐의

- 요약하면, 당신이 근무중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학교의 관리 지도 관련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구체적으로 보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심되는 아동 학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의무적 보고자는 취업과정이나 정기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를 통해 아동과 접촉한 경우

18세 이상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 동일한 가해자의 추가적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역 기관과 아동 보호 서비스에서는 18세 이전에 발생한 학대 상황을 20세까지 보고 받는다. 그 이후에 사법 집행 공무원에게 보내진다.

아동간의 학대도 보고 가능한가?

-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가능하다, 정신적 피해에는 삶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된다.
- 15-18세 두 아동 사이의 아래와 같은 힘이나 강압에 의한 활동이 아닌 합의된 활동은 성적 학대에서 제외된다; 강간, 성폭행,원치 않은 성관계, 집단 성폭행, 성추행, 성기 노출, 근친 상간, 성매매, 성적 학대, 불법적인 미성년 접촉 또는 성적 착취.
- 학교 직원들은 신체적 폭행, 부적절한 성접촉, 심각한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는 따돌림을 주의 하라고 특별히 경고한다.

의무 보고자의 이름이 공개 될 것인가?

-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신원 정보는 법 집행 당국이나 지방 검찰청에 넘겨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밀 사항으로 유지된다.

- 아이에게 다른 상담자에게도 폭행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
- 아동 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 질문하지 말 것.
- 아이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지 말 것.
- 아이를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말 것.
- 학대 의심 사례 보고하기:
 - 먼저, ChildLine (1-800-932-0313) 에 즉시 전화하기
 - 그 다음, 교회나 학교 담당자에게 통보하기
- 추가적인 질문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한다:

Phyllis Haney, Director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 Young People
Saint Paul Seminary
2900 Noblestown Road
Pittsburgh, PA 15205
(412) 456-5633
[Email: phaney@diopitt.org](mailto:phaney@diopitt.org)

OTHER

아동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가?

- 당신이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없다.

만약 의심스러운 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 고의적으로 아동 학대를 신고 하지 않은 의무 보고자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초기 보고 불이행: 2급 경범죄
 - 계속된 보고 불이행: 1급 경범죄
 - 이후, 고의적인 보고 불이행: 3급 중죄
 - Note:
 - 당신이 알수 있는 1급 또는 그 이상의 아동 학대를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제3급 중죄에 처해질수 있다.
 - 아동에게 저질러진 범죄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공소 시효는 5년이거나 그 이상이다.

- 의무적 보고자는 아동의 보살핌, 감독, 지침 또는 훈련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이러한 책임이 있는 기관, 단체, 학교,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 아동 학대 피해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 14세 이상 개인의 아동 학대를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 예외되는 사제

- 사제에게 전달된 비밀 정보는 보호되고 보고대상이 되지않는다.

학대 수준이 아니지만 우려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나 부적절한 주택, 의복, 관리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보호 서비스 사례를 통해 평가 할 수 있는 ChildLine 또는 카운티의 아동 기관의 상단 사례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무슨 일이 일어 나는가?

- ChildLine 은 24시간 내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와 청소년 기관에 보고한다.
- 기간 연장의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해당 부서는 근거가 있던 없던 최종 보고서의 의무 보고자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제공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WHERE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 **첫번째, 주정부의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of the Commonwealth (via ChildLine),** 에 보고하기
 - 주 전체에 적용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00-932-0313 로 전화 하기
 - 만약 당신이 전화 신고를 한다면, 48시간 이내에 학대가 발생한 카운티에 있는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https://reportsuspectedabuse.com/>에 있는 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주정부의 아동, 청소년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http://www.dhs.state.pa.us/findfacilsandlocs/countychildrenandyouthdirectory/index.htm> 에서 구할 수 있다.
 - <https://www.compass.state.pa.us/cwis> 에서 서면 보고서 작성하기
- **두번째, 교회나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Schools Note:
 - 만약 학교 관리자가 용의자로 의심될 경우, 그 관리자를 제외 시킨 다음 지방 검찰청, 검사, 교육감에게 학대 의심 사례를 즉시 보고한다.
 - 그렇지 않으면, 학교 직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보고를 받은 후에 학교 관리자는 즉시 지역 경찰청, 지방 검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학교 선생님이 신고한 학대 의심 사례를 접수 받은 후, 교육감은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WHEN

언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즉시 ChildLine 1-800-932-0313에 신고
 - 즉시 교회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신고
- ChildLine 에 신고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한다.

HOW

의무 보고자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의무 보고자로 확인된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피츠버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www.reportabusepa.pitt.edu. 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각 항목별로 세 개의 인증서를 인쇄 한다: the staff member/ volunteer, the parish/school, the Diocesan HR Office/Safe Environment Coordinator.
 - 이 과정은 공인 교사 자격 요건 126조를 충족시킬 것이다.
- 의무 보고자는 5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Protocol(규약)

- 만약 범죄가 저질러 졌거나 희생자가 의심된다면: **911** 또는 지역 법 집행기관에 사건을 즉시 신고한다.
- 만약 아동이 자발적으로 학대를 밝힌다면: 감정을 통제하고 충격적인,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지 말것
 - 듣기: 아동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할 것
 - 안심시키기: 아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것
 - 서류: 날짜, 시간, 참석자 및 발견자를 알려 주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할 것
 - **Do Not:**
 - 이야기를 강요하지 말고 당신의 관심과 필요할때 언제든지 대화 할 수 있음을 알게 할 것